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소독업 지위승계를 신설하고,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외에 실시 대상·시기, 주의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며 기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521호, 2026. 4. 7. 공포, 2026. 10. 8. 시행)됨에 따라, 소독업 지위승계신고의 구체적인 방법과 필요 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존에 시행규칙으로 정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하위법령을 재정비하여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

아울러, 소독의 대상과 소독의 방법에 대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최소한으로 설정된 규제로서 재검토 실익이 낮다고 판단됨에 따라 재검토 대상 규제에서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중 “법 제32조제3항”을 “법 제32조제4항”으로, “따르되,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·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2(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) ① 법 제52조의2에 따라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독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상속의 경우: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
2. 영업양도의 경우 : 양도·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
3.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: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(상속의 경우로 한정한다)를 제출받은 시장·

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)해야 한다.

제4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소독업자 지위승계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	즉시
① 승계하는 사람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전화번호		
② 승계받는 사람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전화번호		
③ 영업소	명칭(상호)	변경 전	변경 후	
	영업의 종류			
	주소	(전화번호 :)		
④ 신고번호		⑤ 승계사유	[] 상속 [] 영업양도 [] 그 밖의 사유()	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」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상속의 경우	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
	2. 영업양도의 경우	양도·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
	3. 그 밖의 경우	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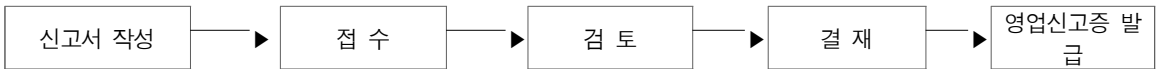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: 시·군·구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)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약사법」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, <u>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· 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.</u> <u><신 설></u>	제26조(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) 법 제32조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따른다.</u> <u>제39조의2(소독업자의 지위승계 신고) ① 법 제52조의2에 따라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독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 <u>1. 상속의 경우: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</u> <u>2. 영업양도의 경우 : 양도 · 양</u>

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
본

3.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:

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
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
있는 서류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(상속의
경우로 한정한다)를 제출받은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
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
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
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
보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고
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
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
하도록 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
를 하려는 자가 「부가가치세
법」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
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
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「부
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
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
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
군수·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
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

